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 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유사수신행위의규 제에관한법률위반·배상명령신청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5. 7. 2007고합1375(분리)-2, 2008고합1247(병합), 2009고합10(병합), 2008초기4062, 2009초기 398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외 38인

【검사】 신영식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외 12인

【배상 신청인】배상 신청인 1외 22인

【주문】

1

[피고인 1, 피고인 2, 피고인 3, 피고인 4, 피고인 5, 피고인 6, 피고인 7, 피고인 8, 피고인 11]

- 1. 피고인 1을 징역 12년에, 피고인 7을 징역 9년에, 피고인 3, 피고인 11을 각 징역 8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7년에,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,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, 피고인 6을 징역 2년 6월에, 피고인 8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.
- 2.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9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, 각 199일을 피고인 2, 피고인 4에 대하여, 201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, 1일을 피고인 8에 대하여, 129일을 피고인 11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.

[피고인 9]

- 1.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.
- 2. 다만, 피고인 9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3. 피고인 9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[피고인 10]

- 1. 피고인 10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
- 2. 다만,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3. 피고인 10에 대하여 2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[피고인 17, 피고인 25, 피고인 36]

- 1. 피고인 17, 피고인 25, 피고인 36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- 2. 다만, 피고인 17, 피고인 25, 피고인 36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3. 피고인 17, 피고인 25, 피고인 36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[피고인 16, 피고인 18, 피고인 19, 피고인 20, 피고인 23]

- 1. 피고인 16, 피고인 18, 피고인 19, 피고인 20, 피고인 23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.
- 2.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16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.
- 3. 다만, 피고인 16, 피고인 18, 피고인 19, 피고인 20, 피고인 2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4. 피고인 16, 피고인 18, 피고인 19, 피고인 20, 피고인 23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[피고인 12, 피고인 13, 피고인 14, 피고인 15, 피고인 33]

- 1. 피고인 12, 피고인 13, 피고인 14, 피고인 15, 피고인 33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.
- 2. 다만, 피고인 12, 피고인 13, 피고인 14, 피고인 15, 피고인 3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3. 피고인 12, 피고인 13, 피고인 14, 피고인 15, 피고인 33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[피고인 21, 피고인 22, 피고인 24, 피고인 26, 피고인 27, 피고인 32]

- 1. 피고인 21, 피고인 22, 피고인 24, 피고인 26, 피고인 27, 피고인 32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.
- 2. 다만, 피고인 21, 피고인 22, 피고인 24, 피고인 26, 피고인 27, 피고인 3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3. 피고인 21, 피고인 22, 피고인 24, 피고인 26, 피고인 27, 피고인 32에 대하여 각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[피고인 28, 피고인 29, 피고인 31]

- 1. 피고인 28, 피고인 29, 피고인 31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.
- 2. 다만, 피고인 28, 피고인 29, 피고인 3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3. 피고인 28, 피고인 29, 피고인 31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[피고인 30, 피고인 34, 피고인 35]

- 1. 피고인 30, 피고인 34, 피고인 35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.
- 2. 다만, 피고인 30, 피고인 34, 피고인 3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3. 피고인 30. 피고인 34. 피고인 35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[피고인 37, 피고인 38 주식회사, 피고인 39 주식회사]

- 1. 피고인 37을 벌금 3,000,000원에, 피고인 38 주식회사, 피고인 39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- 1. 피고인 37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37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- 1. 피고인 37, 피고인 38 주식회사, 피고인 39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배상명령신청인들]

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"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..." (판례, 2007고합1375(분리)-2, 2008고합1247(병합), 2009고합10(병합), 2008초기4062, 2009초기398)

]

[이유]

1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